

■ 최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 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정하였습니다.
-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0. 1. 16.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6. 시행\)](#)